

# 대한민국 입국사증 체류자격별 구비 서류

2011.1.10(월)

주몽골 대한민국대사관

## 1. 단기 상용(C-2)

### A.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자

연번	제출 서류(공통필수 서류)	비 고
1	사증발급신청서	
2	여권 및 여권 사본 1매	
3	무범죄 증명서	-최초 입국자에 한함(경찰서에서 발급 가능)

연번	제출 서류(개별필수 서류)	비 고
4	사증신청사유서	-사업 및 한국입국 목적을 상세히 기술(별도 양식 없음)
5	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	-납세사실증명서상의 회사명과 동일하여야 함.
6	신청인의 납세사실증명서	-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, 회사명, 회사의 주소, 전화번호, 대표자명, 직전 2분기 납세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(국세청에서 발급)
7	신청인의 은행잔고증명서 및 통장사본	-미화 5,000불 이상의 잔고증명서 및 최근 3개월 이상의 거래내역이 포함된 통장사본을 제출
8	한국내 초청자의 초청장	-대사관 양식을 반드시 사용 ·초청장에 초청자 인감을 날인하고, 초청자의 인감증명서 원본을 첨부 ·초청장에 대한 공증은 불요 -초청자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일 경우 초청공문으로 대체
9	한국내 초청자의 경제력 입증자료	-초청자가 직장인인 경우 : ▶재직증명서 및 ▶급여·납세자료(개인소득세납부 증명서,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, 월별 급여사실 확인이 가능한 6개월분의 예금 내역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) -초청자가 사업자인 경우 : ▶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납세사실증명서
10	상용목적 입증자료	-구매계약서, 사업추진 의향서, 수출입면장, 거래실적 증빙서류, B/L 사본 등을 제출

## B.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지 않은 자

연번	제출 서류(공통필수 서류)	비 고
1	사증발급신청서	
2	여권 및 여권 사본 1매	
3	무범죄 증명서	-최초 입국자에 한함(경찰서에서 발급 가능)

연번	제출 서류(개별필수 서류)	비 고
4	사증신청사유서	-사업 및 한국입국 목적을 상세히 기술(별도 양식 없음)
5	신청인의 사업장 관련 자료	-▶임대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임차확인서(인지도가 낮은 상가의 경우 임대인 관련 자료 제출 필요) 또는 ▶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(영업장 주소, 연락처, 계약 양당사자 이름, 계약일자, 월 임대료 등이 표시되어야 함) -본인 소유 사업장인 경우 본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료
6	신청인의 은행잔고 증명서 및 통장사본	-미화 5,000불 이상의 잔고증명서 및 최근 3개월 이상의 거래내역이 포함된 통장사본을 제출
7	한국내 초청자의 초청장	-대사관 양식을 반드시 사용 ·초청장에 초청자 인감을 날인하고, 초청자의 인감증명서 원본을 첨부 ·초청장에 대한 공증은 불요
8	한국내 초청자의 경제력 입증자료	-초청자가 직장인인 경우 : ▶재직증명서 및 ▶급여·납세자료(개인소득세납부 증명서,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, 월별 급여사실 확인이 가능한 6개월분의 예금 내역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) -초청자가 사업자인 경우 :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납세사실증명서
9	상용목적 입증자료	-구매계약서, 사업추진 의향서, 수출입면장, 거래실적 증빙서류, B/L 사본 등을 제출

### C. 직장인

연번	제출 서류(공통필수 서류)	비 고
1	사증발급신청서	
2	여권 및 여권 사본 1매	
3	무범죄 증명서	-최초 입국자에 한함(경찰서에서 발급 가능)

연번	제출 서류(개별필수 서류)	비 고
4	신청인의 재직증명서 및 사회보험증 사본	
5	신청인에 대한 회사의 출장명령서	
6	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	-납세사실증명서상의 회사명과 동일하여야 함.
7	회사의 납세사실증명서	-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, 회사명, 회사의 주소, 전화번호, 대표자명, 직전 2분기 납세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.(국세청에서 발급)
8	한국내 초청자의 초청장	-대사관 양식을 반드시 사용 ·초청장에 초청자 인감을 날인하고, 초청자의 인감증명서 원본을 첨부 ·초청장에 대한 공증은 불요 -초청자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일 경우 초청공문으로 대체
9	한국내 초청자의 경제력 입증자료	-초청자가 직장인인 경우 : ▶재직증명서 및 ▶급여·납세자료(개인소득세납부 증명서,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, 월별 급여사실 확인이 가능한 6개월분의 예금 내역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) -초청자가 사업자인 경우 : ▶사업자등록증명원 및 ▶납세사실증명서
10	상용목적 입증자료	-구매계약서, 사업추진 의향서, 수출입면장, 거래실적 증빙서류, B/L 사본 등을 제출

연번	제출 서류(제출시 유리한 서류)	비 고
11	신청인의 은행잔고 증명서 및 통장사본	-미화 3,000불 이상의 잔고증명서 및 최근 3개월 이상의 거래내역이 포함된 통장사본을 제출

## 2. 단기 종합(C-3)

### A. 친척 방문·결혼식 참석(결혼한 다문화가족의 초청)

연번	제출 서류(공통필수 서류)	비고
1	사증발급신청서	
2	여권 및 여권 사본 1매	
3	무범죄 증명서	-최초 입국자에 한함(경찰서에서 발급 가능)

연번	제출 서류(개별필수 서류)	비고
4	사증신청사유서	-초청자와 초청대상자간의 관계, 초청목적 등을 상세히 기술(별도양식 없음)
5	한국내 초청자의 초청장	-대사관 양식을 반드시 사용 ▶ 초청자가 한국인(귀화한 한국인 포함)인 경우 : 초청장에 초청자 인감을 날인하고, 초청자의 인감증명서 원본을 첨부(초청장에 대한 공증 불요) ▶ 초청자가 한국인과 결혼한 몽골인인 경우 : 공증된 초청장과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동의서(별도 양식 없음)를 제출
6	몽골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(앞뒷면)	-초청자가 귀화한 한국인인 경우 동 외국인등록증 대신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(출입국관리소에서 발급)을 제출(몽골 영문 이름을 확인하기 위함)
7	한국내 초청자의 혼인관계 증명서	-한국인 초청자와 몽골인 배우자간 혼인관계 증명서류(한국에서 발급)
8	몽골인 초청대상자의 가족(친척)관계 증명서	-한국 거주 몽골인과 초청대상자간 가족(친척)관계 증명서(몽골에서 발급)
9	몽골인 초청대상자의 경제력 관련 서류	-직계가족(부모, 조부모, 자녀) 초청인 경우 경제력 관련 서류 제출 불요 -경제력 관련 서류는 ▶은행잔고증명서(미화 3,000불 이상) 및 통장사본(최근 3개월 이상의 거래내역 포함), ▶재직증명서 및 사회보험증 사본 등을 제출
10	청첩장 또는 예식장 사용 계약서	-결혼식 참석인 경우

연번	제출 서류(제출시 유리한 서류)	비 고
11	한국내 초청자의 경제력 입증자료	-초청자가 직장인인 경우 : ▶재직증명서 및 ▶급여·납세자료(개인소득세납부 증명서,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, 월별 급여사실 확인이 가능한 6개월분의 예금 내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) -초청자가 사업자인 경우 : ▶사업자등록증명원 및 ▶납세사실증명서

※ 지인 방문은 친척 방문에 준하며, 이 경우 초청대상자의 경제력 관련 서류가 가장 중요

**B. 친척 방문(유학중인 자의 초청) : 1학기 이수후 초청 가능**

연번	제출 서류(공통필수 서류)	비 고
1	사증발급신청서	
2	여권 및 여권 사본 1매	
3	무범죄 증명서	-최초 입국자에 한함(경찰서에서 발급 가능)

연번	제출 서류(개별필수 서류)	비 고
4	사증신청사유서	-초청자와 초청대상자간 관계, 초청목적 등을 상세히 기술(별도 양식 없음)
5	몽골인 초청자의 초청장	-대사관 양식을 반드시 사용(초청장에 대한 공증 필요)
6	초청자의 외국인 등록증 사본(앞뒷면)	
7	초청자의 재학증명서	-한국에서 발급
8	초청자의 성적증명서	-한국에서 발급
9	초청자와 초청대상자의 가족(친척)관계 증명서	-한국거주 몽골인과 초청대상자간 가족(친척)관계 증명서(몽골에서 발급)
10	초청대상자의 경제력 관련 서류	-17세 미만 미성년 자녀, 60세 이상 부모를 초청시 경제력 관련 서류 제출 -경제력 관련 서류는 ▶은행잔고증명서(미화 3,000불 이상) 및 통장사본(최근 3개월 이상의 거래내역 포함), ▶재직증명서 및 사회보험증 사본 등을 제출



### C. 친척 방문(투자자격 체류자의 초청)

연번	제출 서류(공통필수 서류)	비 고
1	사증발급신청서	
2	여권 및 여권 사본 1매	
3	무범죄 증명서	-최초 입국자에 한함(경찰서에서 발급 가능)

연번	제출 서류(개별필수 서류)	비 고
4	사증신청사유서	-초청자와 초청대상자간의 관계, 초청목적 등을 상세히 기술(별도 양식 없음)
5	몽골인 초청자의 초청장	-대사관 양식을 반드시 사용(초청장에 대한 공증 필요)
6	초청자의 외국인 등록증 사본(앞뒷면)	
7	초청자의 사업자등록 증명원	-한국에서 발급
8	초청자의 납세사실증명서	-한국에서 발급
9	초청자와 초청대상자의 가족(친척)관계 증명서	-한국거주 몽골인과 초청대상자간 가족(친척)관계 증명서(몽골에서 발급)
10	초청대상자의 경제력 관련 서류	-17세 미만 미성년 자녀, 60세 이상 부모 또는 배우자 초청시 경제력 관련 서류 제출 불요 -경제력 관련 서류는 ▶은행잔고증명서(미화 3,000불 이상) 및 통장사본(최근 3개월 이상의 거래내역 포함), ▶재직증명서 및 사회보험증 사본 등을 제출

#### D. 친척 방문(기타자격 체류자의 초청)

연번	제출 서류(공통필수 서류)	비 고
1	사증발급신청서	
2	여권 및 여권 사본 1매	
3	무범죄 증명서	-최초 입국자에 한함(경찰서에서 발급 가능)

연번	제출 서류(개별필수 서류)	비 고
4	사증신청사유서	-초청자와 초청대상자간의 관계, 초청목적 등을 상세히 기술(별도 양식 없음)
5	몽골인 초청자의 초청장	-대사관 양식을 반드시 사용(초청장에 대한 공증 필요)
6	초청자의 외국인 등록증 사본(앞뒷면)	
7	초청자의 재직증명서	-한국에서 발급
8	초청자의 급여·납세 관련 증명서	-한국에서 발급
9	초청자와 초청대상자의 가족(친척)관계 증명서	-한국거주 몽골인과 초청대상자간 가족(친척)관계 증명서(몽골에서 발급)
10	초청대상자의 경제력 관련 서류	-17세 미만 미성년 자녀, 60세 이상 부모 또는 배우자 초청시 경제력 관련 서류 제출 불요 -경제력 관련 서류는 ▶은행잔고증명서(미화 3,000불 이상) 및 통장사본(최근 3개월 이상의 거래내역 포함), ▶재직증명서 및 사회보험증 사본 등을 제출

### E. 몽골 거주 한국인의 배우자(또는 직계가족)의 한국 방문

연번	제출 서류(공통필수 서류)	비 고
1	사증발급신청서	
2	여권 및 여권 사본 1매	
3	무범죄 증명서	-최초 입국자에 한함(경찰서에서 발급 가능)

연번	제출 서류(개별필수 서류)	비 고
4	사증신청사유서	-한국입국 목적을 상세히 기재(별도 양식 없음)
5	몽골 혼인관계 증명서	-한국인의 배우자인 몽골인의 직계가족(부모, 조부모, 자녀)이 방문하는 경우 한국인의 배우자인 몽골인의 가족(친척)관계 증명서 -몽골에서 발급
6	한국 혼인관계 증명서	-한국에서 발급
7	한국인 배우자의 몽골 장기거주 입증자료	-외국인 투자증 사본 등 제출

**F. 교민투자회사 직원(최소 6개월 이상 근무)의 한국 방문(교민투자회사 사장과 동행)**

연번	제출 서류(공통필수 서류)	비 고
1	사증발급신청서	
2	여권 및 여권 사본 1매	
3	무범죄 증명서	-최초 입국자에 한함(경찰서에서 발급 가능)

연번	제출 서류(개별필수 서류)	비 고
4	신청인의 재직증명서 및 사회보험증 사본	-교민투자회사명과 재직기간, 직위 등이 명시되어야 함
5	교민투자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	-납세증명서상의 회사명과 동일하여야 함
6	교민투자회사의 납세사실증명서	-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, 회사명, 회사의 주소, 전화번호, 대표자명, 직전 2분기 납세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. (국세청에서 발급)
7	교민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사본	-외국인투자청 발급(교민투자회사명과 교민명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함)
8	교민의 귀국 보증각서	-대사관 양식을 반드시 사용
9	교민 여권 사본	
10	(교민이 동행하지 않는 경우) 한국으로부터의 초청장	-대사관 양식을 반드시 사용 · 초청장에 초청자 인감을 날인하고, 초청자의 인감증명서 원본을 첨부 · 한국인의 초청시 초청장에 대한 공증은 불요

## G. 개별 관광

연번	제출 서류(공통필수 서류)	비 고
1	사증발급신청서	
2	여권 및 여권 사본 1매	
3	무범죄 증명서	-최초 입국자에 한함(경찰서에서 발급 가능)

연번	제출 서류(개별필수 서류)	비 고
4	신청인의 경제력 입증 자료	<p>※ 경제력 입증 자료 예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직장인인 경우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월급여 100만 투그릭 이상의 직장인</li> <li>- 연간 소득 미화 2만불 이상 증명 서류 또는 부동산 관련 서류, 통장사본(최근 3개월 이상의 거래내역 포함), 재직증명서 및 사회보험증 사본 등 몽골내 안정적 경제력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한 자</li> </ul> </li> <li>▶ 사업자인 경우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납세사실증명서상 납세액이 100만 투그릭 이상인 기업의 대표</li> <li>- 연간 소득 미화 2만불 이상 증명 서류 또는 부동산 관련 서류, 통장사본(최근 3개월 이상의 거래내역 포함) 등으로 몽골내 안정적 경제력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한 자</li> </ul> </li> </ul> <p>-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부모, 자녀, 배우자의 경우 상기인의 경제력 입증자료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</p>

※ 외교관·관용 여권 소지자(최근 2년내 4회 이상 또는 총 10회 이상 방문으로 무사증 대상이 된 자 포함)와 동반하는 배우자, 17세 미만 미성년자녀, 60세 이상 부모는 가족관계 증명서만을 제출

## H. 단체 관광(여행사를 통한 관광)

연번	제출 서류(공통필수 서류)	비 고
1	사증발급신청서	
2	여권 및 여권 사본 1매	
3	무범죄 증명서	-최초 입국자에 한함(경찰서에서 발급 가능)

연번	제출 서류(개별필수 서류)	비 고
4	여행자의 경제력 입증 자료	※ 경제력 입증 자료 예시 ▶ 직장인인 경우 - 월급여 80만 투그릭 이상의 직장인 - 연간 소득 미화 1만불 이상 증명 서류 또는 부동산 관련 서류, 통장사본(최근 3개월 이상의 거래내역 포함), 재직증명서 및 사회보험증 사본 등 몽골내 안정적 경제력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한 자 ▶ 사업자인 경우 - 납세사실증명서상 납세액이 80만 투그릭 이상인 기업의 대표 - 연간 소득 미화 1만불 이상 증명 서류 또는 부동산 관련 서류, 통장사본(최근 3개월 이상의 거래내역 포함) 등으로 몽골내 안정적 경제력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한 자
5	한국 여행사의 초청장	-별도 양식 없음
6	한국 여행사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납세사실증명서	
7	몽골 여행사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납세사실증명서	
8	몽골 여행사의 직전 단체여행자 귀국 입증서류	-여행자의 한국 사증면 복사본 제출
9	예약된 왕복 항공권 사본	-모든 여행자가 동일 일자 항공일정으로 예약되어 있어야 함
10	여행일정표	
11	몽골 여행사 소개서	

## I. 회의·세미나 참석 또는 단기연수

연번	제출 서류(공통필수 서류)	비 고
1	사증발급신청서	
2	여권 및 여권 사본 1매	
3	무범죄 증명서	-최초 입국자에 한함(경찰서에서 발급 가능)

연번	제출 서류(개별필수 서류)	비 고
4	한국내 초청자의 초청장	-대사관 양식을 반드시 사용 ·초청장에 초청자 인감을 날인하고, 초청자의 인감증명서 원본을 첨부 ·초청장에 대한 공증은 불요 -초청자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 초청공문으로 대체
5	신청인의 직업 관련서류	-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납세사실증명서 -직장인 : 재직증명서 및 사회보험증 사본 -부인 동반 초청인 경우, 혼인관계증명서 제출
6	초청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	-초청자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 불요
7	초청자의 납세사실증명서	-초청자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 불요

## J. 운동경기 참가자

연번	제출 서류(공통필수 서류)	비 고
1	사증발급신청서	
2	여권 및 여권 사본 1매	
3	무범죄 증명서	-최초 입국자에 한함(경찰서에서 발급 가능)

연번	제출 서류(개별필수 서류)	비 고
4	한국 초청자의 초청공문	-기관·단체의 소개, 행사개요, 경비부담자 등이 포함되어야 함 -참가자 명단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
5	한국 초청자의 사업자 등록증 (또는 고유번호증) 사본	-국가,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불요
6	몽골 참가 단체의 협조요청 공문	-단체 소개, 행사 개요, 경비부담자, 참가자 명단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.
7	참가자가 동 단체 소속임을 입증하는 자료	-직장인 : 재직증명서 및 사회보험증 사본 -학생 : 재학증명서



## K. 자선(위문) 공연 참가자

연번	제출 서류(공통필수 서류)	비 고
1	사증발급신청서	
2	여권 및 여권 사본 1매	
3	무범죄 증명서	-최초 입국자에 한함(경찰서에서 발급 가능)

연번	제출 서류(개별필수 서류)	비 고
4	한국 초청자의 초청장	-대사관 양식을 반드시 사용 ·초청장에 초청자 인감을 날인하고, 초청자의 인감증명서 원본을 첨부 ·초청장에 대한 공증은 불요 -국가,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초청공문으로 대체
5	초청자의 사업자 등록증 (또는 고유번호증) 사본	-국가,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불요
6	초청자의 납세사실증명서	-국가,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불요
7	몽골 참가 단체의 협조요청 공문	-단체 소개, 행사 개요, 경비부담자, 참가자 명단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.
8	참가자가 동 단체 소속임을 입증하는 자료	-직장인 : 재직증명서 및 사회보험증 사본 -학생 : 재학증명서

## I. 종교행사 참가 또는 종교기관 방문

연번	제출 서류(공통필수 서류)	비 고
1	사증발급신청서	
2	여권 및 여권 사본 1매	
3	무범죄 증명서	-최초 입국자에 한함(경찰서에서 발급 가능)

연번	제출 서류(개별필수 서류)	비 고
4	한국 초청자의 초청장	-대사관 양식을 반드시 사용 ·초청장에 초청자 인감을 날인하고, 초청자의 인감증명서 원본을 첨부 ·초청장에 대한 공증은 불요 -초청자는 반드시 초청기관의 장(예 : 담임목사)이어야 함. -초청장 대신 초청공문으로 대체가능 -한국인 선교사가 중간에서 협조요청을 한 경우, 동 선교사의 몽골 체류 허가증과 여권 인적사항면 사본을 제출
5	초청자의 사업자 등록증 (또는 고유번호증) 사본	
6	몽골 단체의 협조요청 공문	-단체 소개, 행사 개요, 경비부담자, 참가자 명단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.
7	몽골 단체 설립 관련 서류	
8	참가자가 동 단체 소속임을 입증하는 자료	-직장인 : 재직증명서 및 사회보험증 사본 -학생 : 재학증명서

## M. 의료 관광

연번	제출 서류(공통필수 서류)	비 고
1	사증발급신청서	
2	여권 및 여권 사본 1매	
3	무범죄 증명서	-최초 입국자에 한함(경찰서에서 발급 가능)

연번	제출 서류(개별필수 서류)	비 고
4	한국내 병원 진료예약 확인서	-한국내 병원에서 치료중인 자는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 필요
5	몽골 병원의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	-한국 등에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함.
6	환자의 경제력 입증 자료	-경제력 입증 자료 예시 ▶ 직장인인 경우 - 월급여 100만 투그릭 이상의 직장인 - 연간 소득 미화 2만불 이상 증명 서류 또는 부동산 관련 서류, 통장사본 (최근 3개월 이상의 거래내역 포함), 재직증명서 및 사회보험증 사본 등 몽골내 안정적 경제력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한 자 ▶ 사업자인 경우 - 납세사실증명서상 납세액이 100만 투그릭 이상인 기업의 대표 - 연간 소득 미화 2만불 이상 증명 서류 또는 부동산 관련 서류, 통장사본 (최근 3개월 이상의 거래내역 포함) 등으로 몽골내 안정적 경제력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한 자

### (간병인이 필요한 경우)

7	간병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	
8	환자와 간병인간 관계 증명서	-가족(친척)관계 증명서 등을 제출

**N. 의료목적의 입국(의료기관, 비영리법인 등의 무료치료)**

연번	제출 서류(공통필수 서류)	비 고
1	사증발급신청서	
2	여권 및 여권 사본 1매	
3	무범죄 증명서	-최초 입국자에 한함(경찰서에서 발급 가능)

연번	제출 서류(개별필수 서류)	비 고
4	한국 초청기관의 초청장 또는 초청공문	-치료 병원 및 치료비 부담내용이 포함되어야 함. -초청장의 별도 양식 없으며, 공증 불요
5	초청기관의 사업자 등록증 (또는 고유번호증) 사본	
6	몽골 병원의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	

**(간병인이 있는 경우)**

7	환자와 간병인간 관계증명서	
---	----------------	--

### 3. 유학(D-2) : 인터뷰 실시

연번	제출 서류(공통필수 서류)	비 고
1	사증발급신청서	
2	여권 및 여권 사본 1매	
3	무범죄 증명서	-최초 입국자에 한함(경찰서에서 발급 가능)

연번	제출 서류(개별필수 서류)	비 고
4	표준입학허가서	
5	등록금 납입영수증	-최소 1학기 등록금 납입 영수증 제출 필요
6	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사본	
7	최종학교 성적증명서 사본	
8	은행잔고 증명서 및 통장사본	-미화 1만불 이상의 잔고증명서 및 최근 3개월 이상의 거래 내역이 포함된 통장사본을 제출 -본인명의로 아닌 경우에는 가족(친척)관계 증명서 제출(배우자, 부모, 조부모, 자녀의 경우에만 인정)
9	학생 부모의 직업관련 서류	-재직증명서 및 사회보험증 사본을 제출
10	어학능력 입증자료	-한국어 TOPIK 3급이상 또는 영어 TOEFL 550, CBT 210, iBT 80, IELTS 5.5, TEPS 550점 이상
11	(교환학생인 경우) 대학간 학술교류협정서	
12	(장학금 수혜자인 경우) 장학금 수혜 확인서	

※ 인터뷰시 고교 졸업장, 대학 학위증, 성적증명서, 은행통장을 지참(모두 원본)

#### 4. 어학연수(D-4) : 인터뷰 실시

연번	제출 서류(공동필수 서류)	비 고
1	사증발급신청서	
2	여권 및 여권 사본 1매	
3	무범죄 증명서	-최초 입국자에 한함(경찰서에서 발급 가능)
연번	제출 서류(개별필수 서류)	비 고
4	표준입학허가서	
5	1년분 등록금 납입영수증	-1년분 이하를 납입한 경우 1년 이하의 어학연수로 충분하다는 사실(현재 어학능력)을 입증하여야 함.
6	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사본	
7	최종학교 성적증명서 사본	
8	은행잔고 증명서 및 통장사본	-미화 3,000불 이상의 잔고증명서 및 최근 3개월 이상의 거래 내역이 포함된 통장사본을 제출 -본인명의로 아닌 경우에는 가족(친척)관계 증명서 제출(배우자, 부모, 조부모, 자녀의 경우에만 인정)
9	학생 부모의 직업관련 서류	-재직증명서 및 사회보험증 사본을 제출
10	(교환학생인 경우) 대학간 학술교류협정서	
11	(장학금 수혜자인 경우) 장학금 수혜 확인서	

※ 인터뷰시 고교 졸업장, 대학 학위증, 성적증명서, 은행통장을 지참(모두 원본)

## 5. 결혼(F-2) : 인터뷰 실시

연번	제출 서류(공통필수 서류)	비 고
1	사증발급신청서	
2	여권 및 여권 사본 1매	
3	무범죄 증명서	-최초 입국자에 한함(경찰서에서 발급 가능)

### (한국에서 준비되어야 할 서류)

연번	제출 서류(개별필수 서류)	비 고
4	한국인 배우자의 초청장	-대사관 양식(결혼사증 전용)을 반드시 사용 ·초청장에 초청자 인감을 날인하고, 초청자의 인감증명서 원본을 첨부 ·초청장에 대한 공증은 불요
5	혼인관계 증명서	-한국에서 발급(최근 1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)
6	가족관계 증명서	-한국에서 발급(최근 1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)
7	한국내 가족의 결혼동의서	-별도 양식 없음
8	한국인 배우자의 경제력 입증 자료	-한국인 배우자의 직업·은행잔고·주택관련 서류 등을 제출
9	한국인 배우자의 여권사본	-여권 인적사항 면 및 몽골입국사증 부착면 사본 각 1부
10	한국인 배우자의 자필 교제내역서	-알게된 경위 및 교제내역을 기술하여야 함. -최근 3개월간 통화내역서, 이메일 내역등을 첨부
11	사전 교육프로그램 이수증명서	-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교육 이수후 발급

12	소개자 관련서류	<p>-소개자가 자필로 작성한 결혼 경위서(소개 경위 및 교제내역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) 및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소개자가 결혼중개업자인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사업자등록증</li> <li>· 결혼중개업자 등록증</li> <li>· 보증보험 증권</li> </ul> </li> <li>▶ 소개자가 지인인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소개자의 신분관련 서류(인감증명서 원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)</li> <li>· 소개자가 한국거주 몽골인인 경우)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사본</li> </ul> </li> </ul>
----	----------	--

(몽골에서 준비되어야 할 서류)

연번	제출 서류(개별필수 서류)	비 고
13	혼인관계 증명서	-몽골에서 발급
14	몽골내 가족의 결혼동의서	-별도 양식은 없음
15	몽골인 배우자의 자필 교제내역서	-알게된 경우 및 교제내역을 기술하여야 함.
16	사전교육프로그램 이수증명서	-양성평등센터에서 발급
17	결혼한 한국인과 같이 찍은 사진	
18	임신진단서	-몽골인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에만 제출
19	이혼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	-몽골인 배우자가 재혼인 경우에만 제출



**6. 복수사증 : C-2 및 C-3에만 해당**

**A. 공무원 또는 국영기업체에서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의 직원(1회 체류기간 30일)**

연번	제출 서류(공통필수 서류)	비 고
1	사증발급신청서	
2	여권 및 여권 사본 1매	
3	무범죄 증명서	-최초 입국자에 한함(경찰서에서 발급 가능)

연번	제출 서류(개별필수 서류)	비 고
4	재직증명서 및 사회보험증 사본	
5	(C-2 복수사증 희망자) 상용 입국임을 입증하는 자료	

**B. 한국에 정기 취항하는 항공사의 승무원 및 과장급 이상의 직원(1회 체류기간 30일)**

연번	제출 서류(공통필수 서류)	비 고
1	사증발급신청서	
2	여권 및 여권 사본 1매	
3	무범죄 증명서	-최초 입국자에 한함(경찰서에서 발급 가능)

연번	제출 서류(개별필수 서류)	비 고
4	재직증명서 및 사회보험증 사본	
5	(C-2 복수사증 희망자) 상용 입국임을 입증하는 자료	

**C. 최근 2년 이내 4회 이상 및 기간에 관계없이 총 5회 이상 한국을 방문한자(1회 체류기간 30일)**

연번	제출 서류(공통필수 서류)	비 고
1	사증발급신청서	
2	여권 및 여권 사본 1매	

연번	제출 서류(개별필수 서류)	비 고
3	사증신청 사유서	-별도 양식 없음
4	한국 출입국 증명 자료	-한국 출입국사실증명(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) 또는 사증 및 출입국심사인이 있는 여권 원본 또는 복사본 제출
5	(C-2 복수사증 희망자) 상용 입국임을 입증하는 자료	

**D. 한국과 자원·에너지개발·판매 등을 위하여 기업의 설치, 한국의 공사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상담·계약 등의 활동을 하려는 자(1회 체류기간 30일)**

연번	제출 서류(공통필수 서류)	비 고
1	사증발급신청서	
2	여권 및 여권 사본 1매	
3	무범죄 증명서	-최초 입국자에 한함(경찰서에서 발급 가능)

연번	제출 서류(개별필수 서류)	비 고
4	사증신청 사유서	-별도 양식 없음
5	한국과의 자원·에너지개발·판매 관련 계약서 또는 한국의 관련 기업의 초청장	-초청장 별도 양식 없음
6	자원·에너지 관련 기업임을 입증하는 자료	
7	재직증명서 및 사회보험증 사본	

**E. 한국인과 결혼한 몽골인과 그 자녀(1회 체류기간 30일)**

연번	제출 서류(공통필수 서류)	비 고
1	사증발급신청서	
2	여권 및 여권 사본 1매	
3	무범죄 증명서	-최초 입국자에 한함(경찰서에서 발급 가능)

연번	제출 서류(개별필수 서류)	비 고
4	사증신청 사유서	-별도 양식 없음
5	혼인 및 가족관계 입증자료	-배우자 :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및 몽골 혼인관계증명서 -자녀 : 한국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몽골 출생증명서
6	(C-2 복수사증 희망자) 상용 입국임을 입증하는 자료	

**F. OECD 국가의 영주권 소지자 또는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OECD 국가(한국 제외) 방문자(1회 체류기간 30일)**

연번	제출 서류(공통필수 서류)	비 고
1	사증발급신청서	
2	여권 및 여권 사본 1매	
3	무범죄 증명서	-최초 입국자에 한함(경찰서에서 발급 가능)

연번	제출 서류(개별필수 서류)	비 고
4	사증신청 사유서	-별도 양식 없음
5	해당국가 영주권 소지자임을 입증하는 자료 (또는 해당국가 출입국 사실 입증 서류)	
6	(C-2 복수사증 희망자) 상용 입국임을 입증하는 자료	

※ OECD 회원국 : 30개국

- 유럽 : 오스트리아, 벨기에, 체코, 덴마크, 핀란드, 프랑스, 독일, 그리스, 헝가리, 아이슬란드, 아일랜드, 이탈리아, 룩셈부르크, 네덜란드, 노르웨이, 폴란드, 포르투갈, 슬로바키아, 스페인, 스웨덴, 스위스, 터키, 영국
- 아시아 : 한국, 일본
- 북미 및 대양주 : 미국, 캐나다, 멕시코, 호주, 뉴질랜드

**G.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소지자중 우수고객(골드 또는 플래티넘 카드 소지자) : 1회 체류기간 30일**

연번	제출 서류(공통필수 서류)	비 고
1	사증발급신청서	
2	여권 및 여권 사본 1매	
3	무범죄 증명서	-최초 입국자에 한함(경찰서에서 발급 가능)

  

연번	제출 서류(개별필수 서류)	비 고
4	사증신청 사유서	-별도 양식 없음
5	카드사 우수고객임을 입증하는 서류	-카드 사용내역서 등을 통하여 카드 이용 금액이 연간 일정액 이상이 되고 연체 사실이 없어야 함.
6	(C-2 복수사증 희망자) 상용 입국임을 입증하는 자료	

**H. 사회지도층 인사(주요 기업체 임원 등 포함)로서 공관장이 인정하는 자(1회 체류기간 30일)**

연번	제출 서류(공통필수 서류)	비 고
1	사증발급신청서	
2	여권 및 여권 사본 1매	
3	무범죄 증명서	-최초 입국자에 한함(경찰서에서 발급 가능)

  

연번	제출 서류(개별필수 서류)	비 고
4	사증신청 사유서	-별도 양식 없음
5	사회지도층 인사임을 입증하는 자료	
6	(C-2 복수사증 희망자) 상용 입국임을 입증하는 자료	

**I. 단기상용(C-2), 단기종합(C-3) 복수사증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(1회 체류기간 30일)**

연번	제출 서류(공통필수 서류)	비 고
1	사증발급신청서	
2	여권 및 여권 사본 1매	
3	무범죄 증명서	-최초 입국자에 한함(경찰서에서 발급 가능)

연번	제출 서류(개별필수 서류)	비 고
4	사증신청 사유서	-별도 양식 없음
5	가족관계증명서	
6	복수사증 소지자의 복수사증 사본	
7	(C-2 복수사증 희망자) 상용 입국임을 입증하는 자료	

**J. 치료 또는 요양 목적으로 한국을 빈번히 방문하려는 자 또는 환자의 간병을 위하여 입국하는 환자의 배우자, 자녀, 직계가족(1회 체류기간 90일)**

연번	제출 서류(공통필수 서류)	비 고
1	사증발급신청서	
2	여권 및 여권 사본 1매	
3	무범죄 증명서	-최초 입국자에 한함(경찰서에서 발급 가능)

연번	제출 서류(개별필수 서류)	비 고
4	의료 단기 사증 구비 서류	
5	빈번한 입국이 필요함을 입증하는 자료	
6	(간병인의 경우) 배우자, 자녀, 직계가족 입증서류	-가족관계증명서